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원 배치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규정에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제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함으로써 규정의 법적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교육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나, 위원의 범위가 ‘교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신분의 의견수렴이 제한되었음. 이에 위원 자격을 ‘교관’으로 제한하던 것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하여 자문 내용의 전문성과 부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원 배치기준 근거 수정(안 제7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원배치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규정은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타 사관학교 규정과 동일하게 실제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도록 개정
나.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교관’으로 제한하던 것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하여 자문내용의 전문성과 부대 운영의 균형 확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관”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 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고등교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제7조(정원) ----- ----- -----. -----, ----- -----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부교장·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과 교장 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 하의 <u>교관</u> 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u>군인 및 군무원</u>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244